

수원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가단55143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원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임예지

변 론 종 결 2022. 11. 10.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2. 28.에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96,945,65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6,945,6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 예비적 청구]

1. C이 2021. 3. 14.경에 한 망 D의 재산에 관한 상속포기를 96,945,65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6,945,6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2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96,945,6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C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69625), 위 사건에서 2016. 4. 20. ‘C이 원고에게 19,91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는 C에게 2017. 9. 25. 10,000,000원, 2017. 9. 27. 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C은 2017. 9. 27. 원고에게 위 차용금과 2017. 10. 12. 차용할 10,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40,000,000원을 2017. 10. 15.부터 원금 2,000,000원과 이자 1,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D의 사망과 상속관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처분

- 1)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0. 12. 28.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었다.
 - 2)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는 직계비속인 피고, C, E가 있었는데, C은 2021. 3. 14.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2021. 5. 12. 서울가정법원 2021느단51128호 사건으로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 3) 피고와 E는 2021. 5.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부동산을 피고가 전부 소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피고는 이에 기하여 2021. 5.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4) 피고는 2021. 6. 1.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775,000,000원에 F에게 매매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8. 10.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12호증, 을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C은 상속포기절차를 밟기 전에 이미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이로서 망인의 재산상속에 대해 단순승인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그 이후에 행하여진 상속포기는 단순승인 이후의 것으로서 효력이 없거나, 가장행위 또는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있었다거나, C의 상속포기가 가장행위,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망인의 재산에 관한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따라서 C의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96,945,652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C과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받을 경우 C에게 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분배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C은 피고에 대하여 258,333,333원의 금전채권이 있다. C은 무자력인바, 원고의 C에 대한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 분배약정 상 채권을 대위행사한다.

2) 판단

갑 제10, 1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G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21. 6. 1.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 F으로부터 7,75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E C'을 적요란에 기재하여 200만 원을 출금한 사실, ② C은 2021. 2. 10. 원고 명의로 임차한 H아파트 I호를 방화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였고, 이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합13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피고는 2021. 6. 6. 위 형사사건의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출금한 사실, ③ 피고는 2021. 8. 10.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6억 8250만 원 등을 입금받았고, 2021. 8. 25. 'E C입금'을 적요란에 기재하여 2,000만 원을, 2021. 9. 23. 'E C'을 적요란에 기재하여 200만 원을 출금한 사실, ④ 피고가 2021. 11. 16. 'J C입금'을 적요란에 기재하여 200만 원을 출금한 사실, 2021. 12. 14. 'C입금'을 적요란에 기재하여 200만 원을 출금한 사실, 2021. 1. 13. 'C여자친구'를 적요란에 기재하여 200만 원을 출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무렵 C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금원을 출금하고, C의 형사합의금 명목의 돈을 지출한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와 C이 형제지간인 점, 피고는 구속되어 있는

C을 돌보기 위해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과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C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매매대금 분배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제2 예비적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

별지 목록

1.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 85㎡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평스라브

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47.52㎡

2층 47.52㎡

3층 38.88㎡

지층 49.74㎡

(지,1층은 철근콘크리트조에 근린

생활시설(지층:탁구장,1층: 소매

점)2,3층은 벽돌조 주택임)

